

고창군, 치유문화도시 조성 속도 낸다

지원 조례 논의회 가결 근거 마련
지원센터 설립·거버넌스체계 구축
치유마을 육성·문화리더 양성 등 사업

고창군이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주민 주도의 문화생태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창군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법정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창군은 품격있는 역사문화관광리향 균형발전 아래 주민 참여 속 창의적 문화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켜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부터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1개 지자체가 신청해 고창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예비도시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사업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등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성과 지역주민, 문화활동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예비사업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마음치유문화마을 육성, 시민문화리더 양성, 문화도시 아카이브, 시민문화 공동체형성, 시민문화자원 공유, 사회적 문화실현 등 치유문화도시 기초자원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창의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도시사업을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동안 최대 200억원(총사업비 기준)의 사업비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 문화도시의 핵심가치는 지역고유성, 주민자율성, 지속가능성"이라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문화를 통해 치유받고 위로를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은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 지난 3일 발대식을 했다.

고창군 소외계층 전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동

고창군이 소외계층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가동한다. 고창군은 지난 3일 대회의실에서 도배 자원봉사자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기·상하수도·방충망·집수리 등에 대해 수리비용이나 수리방식으로 속을 앓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및 고창군 종합민원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접수하면 빠른 시일내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고창군은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 고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군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군민을 섬기는 '행이근민' 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외된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섬진강변 달려요”...순창군, 스쿠터 임대소 운영

체계산 출렁다리 개장 1주년 맞아
스쿠터·자전거 10대 비치 무료 이용

순창군은 체계산 출렁다리 개장 1주년을 맞아 6일부터 농·특산물 직판장 맞은편에 스쿠터 임대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순창군은 정식 운영을 앞두고 지난 2일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지역주민 대표 등이 스쿠터를 시승했다.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2일 체계산 출렁다리 맞은편에 신설된 스쿠터 임대사업장을 방문해 스쿠터를 시승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체계산 출렁다리는 이용객 대다수가 주변에 즐깁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 스쿠터 임대소를 신설했다. 전기 스쿠터 임대소에는 스쿠터 8대와 2인용 자전거 2대 등 총 10대를 비치, 올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용요금과 운영방식 등의 관련 근거 마련 시까지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섬진강의 멋진 석양도 바라볼 수 있다. 2코스는 섬진강변을 따라 봄철이면 아름답게 피어난 유채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여름이면 섬진강을 활용한 카누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순창군은 앞으로 스쿠터 임대소 운영을 지역 사회단체나 법인에 위탁해 수익금 일부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등 관광소득이 지역으로 환

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 군수는 "적성면은 체계산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다"며 "가족, 연인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니 전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j@kwangju.co.kr

군산시, 취약계층 1만4400명 문화누리카드 지원

군산시는 14억4000만원을 투입해 발급도 사용도 더 편해진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안전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만4400여

명에게 발급한다. 올해는 국비 10억2000만원을 포함 총 14억4000만원을 투입해 1명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분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을 통해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또 실시간 잔액 확인 기능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코로나 여파...정읍 벚꽃축제 올해도 취소

정읍전원에서 매년 열리던 벚꽃축제가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올해도 열리지 않게 됐다. 정읍시는 4월 초로 예정됐던 '2021 정읍 벚꽃축제'를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취소했다. 당초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낮춰 음악과 빛을 테마로 한 행사 개최를 검토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300~400명대 수준으로 유지되며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 주민과 상춘객의 안전을 고려, 축제 취소를 결정했다. 정읍시의 이러한 결정에는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됐다. 벚꽃축제 개최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887명 중 67.7%인 592명이 반대여부를 밝혔다. 올해 벚꽃축제는 취소됐지만 여전히 벚꽃 개화

기 상춘객들의 방문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시엔 벚꽃은 만개 시 울창한 벚꽃터널로 전국 제일의 풍광을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상춘객들의 방문자제를 권고하는 홍보와 함께 올해도 전년도 전 구간의 불법 주차차단 속을 강화하는 등 벚꽃개화기를 맞아 직간접적인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세계적 위기로 치닫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감안해 벚꽃축제 취소를 결정했다"며 "아쉬움이 크지만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가려달라”...군산시, 헌법소원

군산시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21헌바57)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 제출은 지난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원고(군산시) 청구가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이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가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